

교원업적평가규정

(제정 1998. 3. 2.)

(전부개정 2020. 9.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3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교원의 신규임용, 승진 및 재임용, 전환임용, 연구년제 등을 위한 업적 평가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기준) ① 업적은 연구업적, 교육·학생지도 업적, 봉사업적, 산학협력업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 연구업적의 평가기준은 [별표 1],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0.4.1., 2010.12.23, 2011.11.30., 2013.9.1., 2013.12.30., 2016.8.29., 2017.5.22., 2022.12.14., 2023.9.1.>

③ 교육·학생지도 업적의 평가기준은 [별표 3] 및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7.9.13., 2022.12.14.>

④ 봉사업적의 평가기준은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5.22.>

⑤ 산학협력업적의 평가기준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신설 2011.11.30, 개정 2013.1.4., 2013.9.1., 2013.12.30., 2017.5.22.>

⑥ 업적은 따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 평가항목에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14.>

⑦ 업적은 승진 및 재임용 등의 심사 대상 기간 내에 게재, 발간, 운영 등에 관한 업적 제출이 완료된 것으로 한정하여 인정한다. <신설 2022.12.14.>

제4조(지수산정) 연구논문, 저서 및 산학협력 업적에서 연구자 또는 참여자 등이 다수인 경우의 지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8.29.>

업적구분	참여구분	지수산정기준	비고
논문	단독저자	1	* n = 연구자 수 * 논문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본교 대학(원)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는 연구자 수에서 제외 * 연구자 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n=10으로 계산
	책임저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2/(n+2)	
	공동연구자	1/(n+2)	
저서	저자	1/n	* 저자 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n=10으로 계산
산학협력	공동	1/n	* 참여자 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n=10으로 계산

제5조(업적심사) ① 교원은 각 업적을 1년 이내에 웹종합정보시스템(JUIS)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 및 재임용 등의 심사 대상이 되는 교원은 따로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4.>

② 제출한 업적은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칠 수 있으며 심사에서 인정받지 못하였을 경우 산학협력단장 또는 교무처장은 해당 교원에게 즉시 알려야 하고 해당 교원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재심사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③ 평가대상 교원이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교무처장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업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교원이 진다.

제6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 ① 교원의 업적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적평가결과 및 업적급 수립(안)에 대한 심의 및 공지

2. 재심요청 업적에 대한 심의

3. 교원업적평가와 관련된 중요정책에 대한 심의 및 공지

4.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업적에 대한 심의 및 공지

5. 그 밖에 총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업적인정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학생지도 및 산학협력 업적은 업적량의 35%를 연구업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7.2.9.> <개정 2017.12.19., 2018.10.30., 2018.12.11.>

1. 교수법 컨설팅, XClass(XClass+, xClass, tClass, 시그니처 강좌 포함) 강의 신규개발, 교과목개발, 혁신교수법을 적용한 강의 개발 및 운영, 연계·융합·마이크로전공 개발 <신설 2018.12.11.> <개정 2022.8.31., 2024.3.1.>

2. 캡스톤 디자인 지도, 대외 기부금 수혜실적, 기술·경영·디자인지도, 외부 전문인력 특강 유치, 창업동아리 지도, 현장실습 임장지도, 외부연구과제 수탁실적, 유료가족회사유치, 기술이전(기술료)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총 연구업적 인정점수는 승진·재임용을 위한 연구업적 충족량의 20%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11.> <개정 2022.8.31.>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6년 9월 1일자로 체육학부 실기분야로 신규 임용된 교원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16조제4항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및 조교수1 근무 경력은 이 규정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2012년 7월 22일 이전에 조교수로 임용된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 심사에 필요한 업적 충족량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1. 교육중심교수, 연구중심교수, 일반교수의 업적 충족량

구 분 승진·재임용 별		승진소요 최소기간 및 재임용 기간	연구업적충족량			교육· 학생지도 및 취업과 봉사 업적 충족량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예술계열	
승진	조교수에서 부교수	4년	400점 (200점)	400점 (250점)	400점 (250점)	1200점
재임용	조교수	4년	200점 (100점)	200점 (125점)	200점 (125점)	1200점

※ ()안은 전국규모전문학술지급 이상의 연구업적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교수 경과조치) 2013년 8월 31일 이전에 임용(신규, 승진, 재임용)된 교원이 2013년 9월 1일 이후 승진 또는 재임용 심사를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승진 후에는 제12조의 승진 및 재임용 규정을 적용받는다. <개정 2018.10.30.>

1. 일반교수의 업적 충족량

구 분 승진·재임용 별		승진소요 최소기간 및 재임용 기간	연구업적충족량			교육·학생지도 및 취업과 봉사 업적 충족량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예술계열	
승진	조교수에서 부교수	6년	600점(320점)	600점(430점)	600점(430점)	1700점
	부교수에서 정년보장 교수	5년	400점(200점)	400점(250점)	400점(250점)	1500점
재임용	조교수 (1회차)	2년	100점(60점)	100점(90점)	100점(90점)	500점
	조교수 (2회차)	4년	200점(100점)	200점(125점)	200점(125점)	1200점
	부교수	6년	200점(100점)	200점(125점)	200점(125점)	1500점

※ ()안은 전국규모전문학술지급 이상의 연구업적

2. 2013년 8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교원이 2013년 9월 1일 이후 승진 또는 재임용 심사를 받을 경우 연구, 교육·학생지도 및 취업, 봉사, 산학협력 업적의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는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1]을 따르고, 승진 이후에는 이 규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를 따른다. <개정 2017.9.13., 2018.10.30.>

③(산학협력중점교수 경과조치) 2011년 12월 1일 이후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전환한 교수의 승진 및 재임용 심사에 필요한 업적 충족량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업적량과 산학협력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는 전환시기에 상관없이 이 규정에 따른다.
2. 승진 및 재임용 소요기간 도중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전환하였을 때 산학협력 업적 충족량은 승진의 경우 해당 교수의 승진 잔여 학기에 인문사회, 예술계열은 50점을 곱한 값으로 하며, 이공계열은 75점을 곱한 값으로 한다. 재임용의 경우 해당 교수의 재임용 잔여 학기에 인문사회, 예술계열은 40점을 곱한 값으로 하며, 이공계열은 60점을 곱한 값으로 한다

(예시)

승진 소요기간 10학기 중 5학기를 일반교수, 5학기를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재직한 부교수의 정년보장교수 승진 시 산학협력업적 충족량 계산법

$$\rightarrow 5(\text{산학협력중점교수 전환 후 승진 잔여학기}) * 50(75) = 250(375)$$

3. 승진 및 재임용 소요기간 도중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전환한 경우 연구업적, 교육 학생지도 및 취업과 봉사업적 충족량은 승진 및 재임용 잔여 학기 비율로 일반교수 충족량과 산학협력중점교수 점수 충족량을 각각 계산하여 적용한다.

(예시)

승진 소요기간 10학기 중 5학기를 일반교수, 5학기를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재직한 부교수의
정년보장교수 승진 시 연구업적 충족량 계산법

→ 500점 (일반교수의 정년보장교수 승진 시 연구업적 충족량) / 2 + 350점 (산학협력중점
교수의 정년보장교수 승진 시 연구업적 충족량) / 2 = 425)

4. 신청한 유형은 최소 2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교수이하 교원이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전환시
에는 현직급에서의 승진 및 재임용 기간 동안 일반교수로 전환을 금지한다.

④ 모든 교원은 승진 임용 기간 동안 본인이 담당하는 교과목 중, 한 과목 이상에 대해 교수법 컨설팅
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적평가) 2013년 9월 1일 이전에 임용된 교원이 2013년 9월 1일 이후 최초 승진 또는 재임용 심
사를 받을 경우, 연구업적 평가 시 [별표 8]에서 국제전문학술지 논문에 SCOPUS 등재학술지를 포함한
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업적평가는 2018년 9월 1일부
터 실시한다.

제2조(일반교수 경과조치)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28일 사이에 임용(신규, 승진, 재임용)된 교원
이 2016년 9월 1일 이후 승진 또는 재임용 심사를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승진 후에
는 제12조의 승진 및 재임용 규정을 적용받는다. <개정 2018.10.30.>

1. 일반교수

구 분		승진소요 최소기간 및 재임용기간	연구업적			교육·학생지도 및 취업과 봉사, 산학협력업적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예술계열	
승진	조교수에서 부교수	6년	700점(400점)	700점(500점)	700점(500점)	2,100점
	부교수에서 정년보장 교수	5년	500점(300점)	500점(400점)	500점(400점)	1,750점
재임용	조 교 수(1회차)	2년	150점(75점)	150점(100점)	150점(100점)	500점
	조 교 수(2회차)	4년	200점(125점)	200점(150점)	200점(150점)	1,200점
	부 교 수	6년	250점(150)점	250점(200점)	250점(200점)	1,500점

※ ()안은 전국규모전문학술지급 이상의 연구업적

-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28일 사이에 임용(신규, 승진, 재임용)된 교원이 2016년 9월 1일 이후 승진 또는 재임용 심사를 받을 경우 연구 업적의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는 [별표 12]를 따르고, 교육 및 학생지도 업적은 [별표 3], 봉사업적은 [별표 4], [별표 5], 산학협력 업적은 [별표 14]을 따르며 승진 이후에는 이 규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를 따른다. <개정 2018.10.30.>
- 교원은 승진 임용 기간 동안 본인이 담당하는 교과목 중, 한 과목 이상에 대해 교수법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 정년보장 교원은 6년마다 한 과목 이상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수법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특허 및 신안, 평가점수가 100점 이상인 학술논문을 전국규모전문학술지급으로 인정한다. 미술, 음악, 영상만화, 영상디자인, 사진, 연극, 영화, 의상, 체육 분야의 경우도 평가점수가 100점 이상인 연구업적을 전국규모전문학술지급으로 인정한다.
- 교육업적 제고를 통한 교육 내실화를 위해 [별표 3] 교육 및 학생지도 업적 평가항목 중 강의개발 영역 및 취업지도영역 업적을 연구업적으로 대체 인정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연구업적 충족량 중 ()안의 전국규모학술지급 이상의 연구업적은 대체 할 수 없다.
- 비정년계열 교원의 재계약에 따른 업적충족량은 비정년계열교원임용세칙에 따른다.

제3조(산학협력중점교수 경과조치)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28일 사이에 임용(신규, 승진, 재임용)된 산학협력중점교수가 2016년 9월 1일 이후 승진 또는 재임용 심사를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승진 후에는 제12조의 승진 및 재임용 규정을 적용받는다. <개정 2018.10.30.>

1.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업적 충족량

구 분		승진소요 최소기간 및 재임용기간	연구업적			교육·학 생지도 및 취업과 봉사업적	산학협력업적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예술계열		인문사회계열 예술계열	이공계열
승진	조교수에서 부교수	6년	500점(300점)	500점(350점)	500점(350점)	1470점	600점	900점
	부교수에서 정년보장 교수	5년	350점(200점)	350점(250점)	350점(250점)	1225점	500점	750점
재임용	조교수 (1회차)	2년	100점(50점)	100점(70점)	100점(70점)	350점	160점	240점
	조교수 (2회차)	4년	140점(90점)	140점(100점)	140점(100점)	840점	320점	480점
	부교수	6년	175점(100점)	175점(140점)	175점(140점)	1050점	480점	720점

※ ()안은 전국규모전문학술지급 이상의 연구업적

-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28일 사이에 임용(신규, 승진, 재임용)된 교원이 2016년 9월 1일 이후 승진 또는 재임용 심사를 받을 경우 연구 업적의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는 [별표 13]을 따르고, 교육 및 학생지도 업적은 [별표 3], 봉사업적은 [별표 4], [별표 5], 산학협력 업적은 [별표 15]을 따르며 승진 이후에는 이 규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를 따른다. <개정 2018.10.30.>
- 교원은 승진 임용 기간 동안 본인이 담당하는 교과목 중, 한 과목 이상에 대해 교수법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 정년보장 교원은 6년마다 한 과목 이상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수법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특허 및 신안, 평가점수가 100점 이상인 학술논문을 전국규모전문학술지급으로 인정한다. 미술, 음악, 영상만화, 영상디자인, 사진, 연극, 영화, 의상, 체육 분야의 경우도 평가점수가 100점 이상인 연구업적을 전국규모전문학술지급으로 인정한다.
- 교육업적 제고를 통한 교육 내실화를 위해 [별표 3] 교육 및 학생지도 업적 평가항목 중 강의개발 영역 및 취업지도영역 업적을 연구업적으로 대체 인정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연구업적 충족량 중 ()안의 전국규모학술지급 이상의 연구업적은 대체 할 수 없다.
- 비정년계열 교원의 재계약에 따른 업적충족량은 비정년계열교원임용세칙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8년 12월 10일 이전 임용(신규, 승진, 재임용)된 교원이 2018년 12월 11일 이후 승진 또는 재임용 심사를 받을 경우 제12조제7항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 받고 승진 후에는 제12조를 따른다.

1. 산학협력 업적평가항목 중 9개 항목[캡스톤디자인 지도, 대외 기부금 수혜실적, 기술·경영·디자인지도, 외부 전문인력 특강 유치, 창업동아리 지도, 현장실습 임장지도, 외부연구과제 수탁실적, 유료가족회사유치, 기술이전(기술료)]에 대한 실적은 승진·재임용 연구업적 충족량의 20%까지를 연구업적으로 인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2.14.>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8.31.>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14.>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1.19.>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개정 2016.2.23., 2016.8.29., 2017.2.9., 2017.5.22., 2020.9.1., 2023.9.1.>

연구업적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학술 논문	국제전문학술지 게재논문	I.S.I.	300점	I.S.I. 발행학술지(SCI, SCIE, SSCI, A&HCI)
		SCOPUS	150점	SCOPUS 발행학술지(OECD 및 G20 국가에서 발행한 논문에 한함)
	전국규모전문학술지 게재논문	등재지	100점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지
		등재후보지		
저서 ¹	학 술 저 서	국제	150점	
		국내	100점	
	대학교재 이상의 저서		100점	사전포함(250면 이상)
	학술저서의 번역서		100점	
	대학교재 이상의 번역서		100점	문예창작집포함(250면 이상)
	문 예 창 작 집		100점	시집, 소설, 희곡, 평론집 (전공자에 한함)
	초·중등교과서		100점	
	평가·사업보고서 ²			100점
K-MOOC 개발 ³			100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사업 선정
대학발전 기여 ⁴			50점	
※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된 특허 및 신안은 연구업적으로 인정				

- 저서는 ISBN을 받은 업적에 한정하며, 승진 및 재임용 등 평가대상 기간에 최대 100점까지 연구업적으로 인정하고, 100점을 초과하는 업적은 교육업적으로 인정
- 평가·사업보고서는 총장의 승인을 받은 평가(진단, 인증 포함) 및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 인증 또는 선정된 보고서에 대하여 승진 및 재임용 등 평가대상 기간에 최대 100점까지 연구업적으로 인정하며, 그 이상은 봉사업적으로 인정한다.
 - 평가·사업보고서는 신규 또는 단계별 평가에서 인증 또는 선정된 보고서로 한정하여 연구업적으로 인정하며, 그 밖에 연차보고서, 결과보고서, 미인증 또는 미선정 보고서 등은 봉사업적으로 인정한다.
 - 참여 교원 개인별 점수는 해당 부서장 또는 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교무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한다.

구분		주요 대상(예시)	최대 인정점수	
			개인	합계
평가보고서	대학 전체	대학기관평가인증, 대학기본역량진단	100	500

구분		주요 대상(예시)	최대 인정점수	
			개인	합계
(인증)	단대/부서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 교육국제화역량인증	50	300
	학과(전공)	공학교육, 건축학교육, 간호교육,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30	120
사업계획서 (선정)	대학 전체	대학혁신지원사업, LINC3.0사업	50	300
	단대/부서	창업선도대학사업,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사업, 혁신공유대학사업, LiFE 사업	30	120
	학과(전공)	산학관커플링사업, 취업연계형인력양성사업	20	80

3. K-MOOC 개발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에 선정되어 개발한 강좌에 대하여 승진 및 재임용 등 평가대상 기간에 최대 100점까지 연구업적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은 교육업적으로 인정한다.
4. 대학발전 기여는 총장이 따로 인정하는 활동에 대하여 연간 최대 50점까지 연구업적으로 인정한다.(다만, 연구업적 인정을 희망하는 부서의 장은 교무처장에게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연구업적평가항목		평가 점수	비 고
음악 분야	공인된 세계적인 교향악단, 오페라단, 음악제의 주역 또는 협연(Concerto) 공인된 해외음반사와의 정식 계약에 의한 작곡, 연주 음반 출간 오라토리오(Oratorio)의 Solo 실내악(Ensemble)에서 2-5중주 전체 참여(해외) Joint Recital(해외) 실내악(Ensemble)에서 6명 이상의 중주 전체 참여(해외)	300점	공인된 세계적인 교향악단 : 런던, 빈, 베를린, 뉴욕, 모스크바 필하모닉 공인된 세계적인 오페라단 : 메트로폴리탄, 스칼라좌, 로얄, 빈, 로마, 오페라단에 한함 음반 출간은 음악감독, 음악프로듀서로 참여시 해당하며, 음악적 제작행위에 한정함 오라토리오(Oratorio)의 Solo 실내악(Ensemble)에서 2-5중주 전체 참여, Joint Recital, 실내악(Ensemble)에서 6명 이상의 중주 전체 참여의 경우 참여 인원수로 나눈 점수를 반영하며 참여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0으로 한다.
	국내·외 공인된 연주회장에서의 개인발표, 지휘, 오페라의 주역 또는 협연(Concerto) 1인 작곡 작품집 및 작곡, 연주 음반 출간 공인된 국내·외 대회에서의 본상, 특별상 수상 및 전국규모의 공모전에서 대상 오라토리오(Oratorio)의 Solo 실내악(Ensemble)에서 2-5중주 전체 참여(국내) Joint Recital(국내) 실내악(Ensemble)에서 6명 이상의 중주 전체 참여(국내)	100점	지휘는 프로그램 전체 참여, 작곡, 연주 음반 출간은 공인된 제작사에 의한 제작물이어야 한다. 오라토리오(Oratorio)의 Solo 실내악(Ensemble)에서 2-5중주 전체 참여, Joint Recital, 실내악(Ensemble)에서 6명 이상의 중주 전체 참여의 경우 참여 인원수로 나눈 점수를 반영하며 참여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0으로 한다.
미술 디자인 분야	공인된 국제적 공공미술관 초대 개인전 공인된 국제전 초대 개인전 공인된 국제공모전 대상	300점	국제적 공공미술관 : MOMA, 메트로 폴리탄, 구겐하임미술관, 베니스비엔날레, 쌍파울로 비엔날레
	국내·외 공인된 대회 본상, 특별상 국내·외 공인된 전시장 개인전 전국규모의 공모전 대상 국내·외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공동전시회	100점	국제전의 경우는 10개국 이상의 작가가 참여하는 전시회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전은 평면, 입체의 경우 20점 이상의 작품출품을 원칙으로 하며, 사진, 설치, 영상, 기타의 경우는 앞의 규정에 상응하는 작업 정도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공인된 대회나 전국규모의 공모전은 따로 정한다. 아트페어나 기타 상업적인 목표가 일차적인 행사에서의 작품 출품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수에 의한 전시는 참여인원수로 나눈 점수를 반영하며 평면, 입체의 경우 20점 이상의 작품을 출품하면 개인전으로 인정한다.
다만, 음악·미술분야는 개인전이 아닌 경우 전문연주가 또는 전문작가가 2/3 이상 참여한 공연 및 전시에 한정한다.			

연구업적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건축 계획 및 설계 분야	공인된 국제적 현상설계에서 본상(당선작)	300점	I.S.I. 발행 학술지 급으로 인정
	공인된 국제적 현상설계에서 우수상(2등에 한함) 공인된 국내·외 전시장에서의 개인전 공인된 전국규모 현상설계의 본상(1등에 한함) 공인된 전국규모 초대 단체전 및 단체전 작품	100점	개인전의 경우 5점 이상의 작품출품을 원칙으로 하며, 사진, 설치, 영상 기타의 경우는 앞의 규정에 상응하는 작업정도에 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공인된 전국규모의 초대전은 대한민국 건축대전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 초대 단체전 및 단체전 작품의 경우 참여인원수로 나눈 점수를 반영하며 참여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0으로 한다.
조 리	공인된 세계적인 요리경연대회 본상	300점	
	공인된 세계적인 요리경연대회 피초청자 실연, 특별상, 단체상 국내·외 공인된 요리경연대회 본상	100점	
의 상	공인된 세계적인 공모전 본상, 특별상	300점	
	국내·외 공인된 전시장에서 개인전 및 패션쇼 국내·외 공인된 전시장에서 공동작품전 및 공동패션쇼	100점	개인전 및 패션쇼는 10작품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수에 의한 패션쇼는 참여 인원수로 나눈 점수를 반영하며 참여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0으로 한다.
영상 만화 분야	공인된 세계적인 영화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작품발표	300점	시그래프(SIGGRAPH)(미국), 안시국제 애니메이션페스티벌(프랑스), 히로시마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일본), 자그래프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크로와티아), 오타와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캐나다)에 한정함
	국내·외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개인 발표회 국내·외에서 개최하는 영화제, 웨스티벌 작품발표 국내·외 공인된 대회 및 행사에서의 본상 국내 일간지에 주 2회 이상(6개월 이상) 연재하는 칸만화	100점	
	영상 또는 만화作品集 공인된 국제행사에서의 공동 작품 발표	100점	연작물의 경우 5권을 1집으로 한다 다수에 의한 공동 작품은 참여한 인원수로 나눈 점수를 반영하며 참여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0으로 한다.

연구업적 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영상 디자인 분야	공인된 세계적인 영화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작품 발표	300점	시그그래프(SIGGRAPH)(미국), 안시 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프랑스), 히로시마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일본), 자그래프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크로와티아), 오타와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캐나다)에 한정함
	국내·외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개인 및 공동 발표 국내·외에서 개최하는 영화제, 웨스티벌에서의 작품발표 국내·외 공인된 대회 및 행사에서의 본상 해당 분야의 작품집	100점	다수에 의한 공동 작품은 참여한 인원수로 나눈 점수를 반영하며 참여인원이 참여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0으로 한다.
사진 분야	공인된 국제적 공공전시관에서의 초대 개인전 공인된 세계적인 사진전에서의 본선 입상 공인된 세계적인 광고제에서 개인 입상	300점	간느, 뉴욕페스티벌, 런던광고제, 끌리오, 아시아태평양광고제에 한정함.
	국내·외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개인전 개인 창작 작품집 국내·외 공인된 대회 및 행사에서의 본상 국내·외 공인된 전시장에서의 공동작품전	100점	작품수는 20점 이상에 준하는 규모 다수에 의한 공동 작품은 참여한 인원수로 나눈 점수를 반영하며 참여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0으로 한다.
연극 분야	공인된 세계적인 공연예술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연출 공인된 세계적인 공연예술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주역연기 공인된 세계적인 공연예술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희곡(대본) 공연 공인된 세계적인 공연예술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수상	300점	아비뇽축제(프랑스), 앳센연극제(독일), 동경연극제(일본), 에딘버러 축제(영국)에 한정함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국제행사에서의 주요 스텝진(공동 연출 포함)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국내·외 공연의 주요 스텝진(공동 연출 포함)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국내·외 공연의 주역연기 공인된 공연예술작품의 국내·외 공연의 희곡(대본)작가 전국규모 공연예술제에서의 입상 작품집	100점	공동 연출은 참여한 인원수로 나눈 점수를 반영하며 참여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0으로 한다.

연구업적 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영화 분야	공인된 국제 영화제 및 페스티벌에서의 작품 상영	300점	베를린, 칸느, 베니스, 로카로노, 토론토 영화제에 한정함.
	국내·외 개최 공인된 국제영화제, 페스티벌에서의 작품 상영 및 입상 영화관에서의 영화작품 상영 공인된 방송에서의 영화작품 방영 공인된 장소에서의 다큐멘터리 작품 상영 공인된 방송에서의 다큐멘터리 작품 방영 공인된 방송에서의 드라마 작품 방송 전국 규모 방송 드라마 극본의 채택 후 방영 전국규모의 장편 시나리오 작품, 극본 공모전 당선	100점	
	영화분야는 제작, 감독, 프로듀서, 촬영, 편집, 시나리오 등 각 전공 영역은 동일하게 평가 받는다. 장, 단편 구분 없이 적용한다.		
체육 분야	올림픽 게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단장, 감독, 코치로 출전하였을 때	300점	
	아시안 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아시아선수권 대회, 세계대학선수권 대회, 세계청소년선수권 대회(주니어 대회), 아시아 청소년선수권 대회(주니어 대회), 동아시아 대회에 단장, 감독, 코치로 출전하였을 때	100점	

[별표 1의2] 연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2023학년도 1학기 이후 신규임용 교원) <신설 2022.12.14.>

연구업적 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국제	논문	I.S.I.	300점	SCI, SCIE, SSCI, A&HCI
		SCOPUS	150점	OECD 및 G20 국가 발행 또는 등록
	저서 ¹	학술저서	150점	
	특허 ²	해외특허	300점	
국내	논문	등재(후보)지	100점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지
	저서 ¹	저서 및 번역서	100점	학술저서, 대학교재, 사전, 문예창작집, 초·중등교과서
	특허 ²	특허 및 실용신안	100점	
교내	평가·사업보고서 ³		100점	평가 및 진단 인증, 정부 재정지원사업 선정
	K-MOOC 개발 ⁴		100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사업 선정
	대학발전 기여 ⁵		50점	
※ 음악, 미술, 건축, 조리, 연극, 영화, 체육 등의 분야에 대하여는 [별표 1]의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준용				

- 저서는 ISBN을 받은 저서에 대하여 승진 및 재임용 등 평가대상 기간에 최대 100점까지 연구업적으로 인정하며, 그 이상은 교육업적으로 인정한다.
 - 국제 저서는 학술저서로 한정한다.
 - 국내 저서는 학술저서, 대학교재 이상의 저서, 사전, 문예창작집(시집, 소설, 희곡, 평론집) 및 초·중등 교과서를 포함하며, 국내 번역서는 학술저서 및 대학교재 이상의 저서에 대한 번역서로 한정한다.
 - 학술저서, 대학교재 이상의 저서, 사전은 250면 이상인 저서로 한정한다.
 - 문예창작집은 관련 분야 학과(전공) 교원으로 한정한다.
- 특허는 산학협력단에서 권리의 승계를 결정한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하여 승진 및 재임용 등 평가대상 기간에 최대 100점(해외특허는 300점)까지 연구업적으로 인정하며, 그 이상은 산학협력업적으로 인정한다.
- 평가·사업보고서는 총장의 승인을 받은 평가(진단, 인증 포함) 및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 인증 또는 선정된 보고서에 대하여 승진 및 재임용 등 평가대상 기간에 최대 100점까지 연구업적으로 인정하며, 그 이상은 봉사업적으로 인정한다.
 - 평가·사업보고서는 신규 또는 단계별 평가에서 인증 또는 선정된 보고서로 한정하여 연구업적으로 인정하며, 그 밖에 연차보고서, 결과보고서, 미인증 또는 미선정 보고서 등은 봉사업적으로 인정한다.
 - 참여 교원 개인별 점수는 해당 부서장 또는 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교무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한다.

구 분		주요 대상 (예시)	최대 인정점수	
			개인	합계
평가보고서 (인증)	대학 전체	대학기관평가인증, 대학기본역량진단	100	500
	단대/부서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 교육국제화역량인증	50	300
	학과(전공)	공학교육, 건축학교육, 간호교육,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30	120
사업계획서 (선정)	대학 전체	대학혁신지원사업, LINC3.0사업	50	300
	단대/부서	창업선도대학사업,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사업, 혁신공유대학사업	30	120
	학과(전공)	산학관커풀링사업, 취업연계형인력양성사업	20	80

4. K-MOOC 개발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에 선정되어 개발한 강좌에 대하여 승진 및 재임용 등 평가대상 기간에 최대 100점까지 연구업적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은 교육업적으로 인정한다.
5. 대학발전 기여는 총장이 따로 인정하는 활동에 대하여 연간 최대 50점까지 연구업적으로 인정한다.

[별표 2] 삭제 <2023.9.1.>

[별표 3] 교육 및 학생지도 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개정 2016.2.23., 2016.8.29., 2017.9.13., 2017.12.19., 2017.12.20., 2018.7.2., 2018.11.27., 2019.3.1., 2020.9.1., 2024.3.1.>

교육 및 학생지도 업적 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강의 운영	책임강의시간 ¹	50점	학기당
	수업계획서 ²	10/20점	학기당
	성적제출 기한 준수 ³	10점	학기당
	초과강의 ⁴	5점/1시간	학기상한선: 30점
강의 개발	교과목개발 ⁵	50점	연간상한선: 50점
	강의록개발 ⁶	20/30/50점	연간상한선: 1회
	교수법 컨설팅 ⁷	20점/과목	
	교내 교육·워크숍 참석 ⁸	3점/회	연간상한선: 30점
	교수법과정 이수 ⁹	9점/과정	연간상한선: 18점
	iClass 강의 신규개발 ¹⁰	50점/과목	연간상한선: 100점
	iClass 강의 업그레이드개발 ¹¹	30점/과목	연간상한선: 40점
	동시촬영강의 ¹²	30점	연간상한선: 60점
	혁신교수법을 적용한 강의 개발 및 운영 ²⁷	10점/과목	연간상한선: 20점
	인증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작성 ¹³	5점/과목	연간상한선: 30점
	인증 프로그램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¹⁴	30점	
	연계·융합·마이크로전공 개발 ²⁸	30점	전공별 최초 1회
강의 평가	학생의 강의평가 결과점수 ¹⁵	30~50점	학기당
학생 지도	석·박사배출실적 ¹⁶	10/20점	연간상한선: 40점
	비교과교육지도실적 ¹⁷	1점/1시간	연간상한선: 100점
	학술동아리지도활동 ¹⁸	10점	
	학생상담(면담)실적 ¹⁹	2점/1회	연간상한선: 100점
	StarTrack Program 지도활동 ²⁰	30점/학기	연간상한선: 60점
	체육분야 국제 경기대회 지도 (3위 이내 입상) ²¹	50점	연간상한선: 100점
	체육분야 국내 경기대회 지도 (3위 이내 입상) ²²	20점	연간상한선: 60점
취업 지도	각종 국가고시 합격 ²³	5점/합격자1명	연간상한선: 50점
	학생취업 실적 ²⁴	7점/취업자1명	연간상한선: 70점
	StarNet	학기중 산업체 현장실습 입장지도 ²⁵	5점/업체
	Project	방학중 산업체 현장실습 입장지도 ²⁶	5점/업체
			연간상한선: 120점

1. 책임강의시간을 강의한 경우 공히 학기당 50점을 인정한다. 책임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책임시간과 강의시간수에 비례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가. 책임강의시간은 학부, 대학원, 특수대학원의 강의시간을 말한다.

나. 교수 유형별 학기당 주간 강의시간은 「책임시간 및 강의료지급규정」에 따른다. 다만, 직급별

책임강의시간의 차이는 없다.

다. 교수 유형의 정의와 운영에 관하여는 이 규정 제11조에 따른다.

라. 무단결강, 조기종강, 미보강 등과 같은 「수업관리규정」 미준수시에는 학기당 책임강의점수 만점의 10%를 감점한다. <신설 2017.12.19.>

2. 수강바구니 신청 전에 모든 담당교과목의 수업계획서를 입력한 경우 20점을 부여하며, 수강신청 전에 모두 입력한 경우는 10점을 부여한다. 다만, 대상 교과목을 수강바구니 신청기간 이전에 담당교원이 배정된 교과목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8.7.2.>
3. 성적입력 기한 내에 모든 담당교과목의 성적을 입력한 경우 10점을 부여한다.
4. 초과강의는 학부, 대학원, 특수대학원의 강의시간을 합하여 초과강의 1시간당 5점씩 하여 학기당 최대 30점까지 인정한다.
5. 소속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또는 전공주임교수회의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정개선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새로운 추세를 반영한 교과목에 대하여 연간 1과목에 한하여 50점을 부여한다. 다만, 교양 교과목은 수퍼스타칼리지 운영위원회, 연계·융합전공 신설교과목은 융합교육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는다. <개정 2017.9.13., 2020.4.14., 2020.9.1.>
6.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아 제작된 디지털 강의록에 대하여 연간 1과목으로 제한하여 15주분에 대하여 50점, 8주분에 대하여 30점, 4주분에 대하여 20점을 부여한다. <개정 2012.5.31>
7. 교수법컨설팅 이수 시 과목당 20점을 부여한다.
8.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워크숍 과정에 참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교육(워크숍) 1회당 3점을 부여한다.
9.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인정하는 교수법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교육 과정당 9점을 부여한다. <개정 2017.12.19.>
10. iClass 강의를 신규 개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학기에 과목당 50점을 부여한다.
11. iClass 강의를 업그레이드 개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학기에 과목당 30점을 부여한다.
12.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동시촬영 강의에 지원하여 선정된 교수의 강의에 한정하여 30점을 부여하며, 학기당 1개 강좌로 제한한다.
13. 인증 프로그램이란 공학교육 및 보건계열교육, 경영학 교육, 사범대학 인증 평가 등 국가 공인 기관에서 실시하는 인증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학과 및 전공의 교과 운영에 따른 포트폴리오(CQI 보고서 포함)에 대하여 해당 과목당 5점을 부여한다.
14. 위 13호와 관련한 인증 프로그램의 수행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받게 되는 인증평가를 위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해당 교수에게 30점을 부여한다.
15. 교수의 강의평가 결과는 전임교원 기준 백분위에 따라 학기당 최저 30점부터 최고 50점까지 차등 부여한다. 다만, 강의평가 점수 산정시 진로지도세미나 및 통합교양 과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7.12.19., 2018.2.25.>
 - 백분위 80% 이상: 50점
 - 백분위 60%이상 ~80% 미만: 45점
 - 백분위 40%이상 ~60% 미만: 40점
 - 백분위 20%이상 ~40% 미만: 35점
 - 백분위 20% 미만: 30점

16. 석·박사 논문 지도교수에게 석사 한명을 배출하면 10점, 박사를 배출하면 20점을 부여하되 연간 최대 40점으로 한다.
17. 비교과 교육지도 실적 <개정 19.3.1.>
 - 가. 비교과교육이란 정규교과 이외에 추가적으로 개설되는 강의, 학습, 활동, 특강 등 학점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신설 19.3.1.> <개정 20.9.1.>
 - 나. 비교과교육지도 실적은 전공관련 특강, 자격증 대비 특강, 고시관련 특강, 취업 및 진로캠프 특강, 현장 견학 및 답사지도, 대회참가지도, 글로벌 워크숍지도, 허니컴 학습지도로 하며, 그 밖에 비교과교육지원 센터장이 인정하는 비교과교육 실적을 포함한다. <개정 2018.11.27., 2019.3.1.>
 - 다. 비교과교육에 대한 평가점수는 교육시간 1시간당 1점씩 인정한다. 다만,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하며 연간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1.27., 2019.3.1.>
 - 라. 교육시간은 학생역량개발시스템(onSTAR)에 등록된 학생 비교과 활동 시간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수의 교원이 참여할 경우 총 시간을 1.5 배 가산하여 인원 수 대로 나누어 인정한다. <신설 19.3.1.>
 - 마. 비교과교육지도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교원은 비교과교육을 학생역량개발시스템(onSTAR)에 등록 후 비교과교육지원센터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3.1.>
18. 학생 10명 이상의 대학본부 단과대학, 국책사업단에 등록된 학술동아리에 대한 지도에 대하여 동아리당 매학기 10점을 부여한다. <개정 2018.11.27.>
19. 학생상담(면담)실적은 교수가 강의시간 외에 면담시간(진로지도세미나 시간 포함)을 공고하고 학생 상담에 관한 결과물을 제출한 경우 면담학생 1인당 2점씩 인정하여 연간 최대 100점을 부여한다. <개정 2018.2.25.>
20. StarTrack Program에 의하여 각 Track별 지도교수에게 학기당 30점을 부여한다.
21. 체육분야 국제 경기대회는 올림픽 경기,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동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말한다.
22. 체육분야 국내 경기대회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 중별 선수권대회를 말한다
23. 각종 국가고시 합격 실적
 - 가. 각종 국가고시 합격이란 정부 산하의 제 기관에서 실시하는 임용시험 혹은 자격증 및 면허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말한다.
 - 나. 합격자를 배출한 경우, 해당 학생의 소속 학과 혹은 소속 전공의 교수 전원에게 5점씩을 부여한다. 단, 합격은 졸업 후 1년 이내인 경우로 제한하며, 해당 항목의 연간 상한 점수는 50점으로 하여, 합격자의 수가 점수를 초과하더라도 연간 50점만을 인정한다.
 - 다. 국가고시 합격을 통해 획득하게 될 제반 자격증 및 면허의 업적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학과가 신청하고 교무처에서 유권 해석한다.
24. 학생취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교수의 경우 7점을 부여한다. (동일학생에 대하여 중복인정 불가) 다만, 취업은 졸업 후 1년 이내인 경우로 제한하며, 취업관련부서에서 확인한다. <개정 2017.12.20.>
25. StarNet Project에 의하여 학기 중 산업체 현장실습의 임장지도를 실시한 경우 1개 업체당 5점을 해당 교수에게 부여한다.
26. StarNet Project에 의하여 방학 중 산업체 현장실습의 임장지도를 실시한 경우 1개 업체당 5점을 해당 교수에게 부여한다.

27.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인정하는 PBL, TBL 등의 혁신교수법을 적용한 강의를 개발 및 운영하는 경우 해당 학기에 과목당 10점을 부여한다. <신설 2020.9.1.>
28. 슈퍼스타칼리지 융합학부 연계·융합·마이크로전공 신설 참여교원에게 최초 1회 30점을 부여한다. 다만, 참여 교원은 학과당 1명으로 제한하며 융합교육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는다. <신설 2020.9.1.> <개정 2024.3.1.>

[별표 3의2] 교육·학생지도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2023학년도 1학기 이후 신규임용 교원) <신설 2022.12.14.>

교육·학생지도업적 평가항목		평가점수	연간 상한 점수
수업운영 관리	책임시간 준수	20점/학기	100점
	강의평가 점수 ²	0~50점/학기	100점
	「수업관리규정」 및 「학생평가규정」 준수 ³	20점/학기	40점
교수역량 개발 ⁴	교수법 컨설팅 이수	20점/과목	40점
	교수법 관련 특강 및 워크숍 참여	1점/시간	30점
	법정의무교육 이수	20점/년	20점
원격강좌 개발 및 운영 ⁵	K-MOOC(정부사업 선정 및 개발)	100점/과목	100점
	K-MOOC(교내 개발)	50점/과목	
	JJ-MOOC, KOCW	30점/과목	
	iClass, iClass+, xClass, tClass, 시그니처 강좌	30점/과목	
	원격강좌 운영	10점/학기	
학생지도 실적	비교과교육 ⁶	1점/시간	100점
	학생상담 ⁷	1점/건	100점
	동아리지도 ⁸	20점/년	20점
	석·박사배출 ⁹	10·20점/명	60점
핵심성과 관리 ¹⁰	신입생충원율	0~20점/년	20점
	졸업생취업률	0~20점/년	20점
	중도탈락률	0~20점/년	20점

- 책임시간 준수는 「책임시간 및 강의료 지급규정」에 따른 책임시간 및 강의시수(학부 및 대학원 수업)로 평가한다.
 - 책임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 1학점당 5점을 평가점수에 가산한다. 다만, 학기당 초과 6학점까지 인정한다.
 - 책임시간을 미달한 경우, 미달 1학점당 10점을 평가점수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규임용 첫 학기는 예외로 한다.
 - 전 목에도 불구하고, 3학점 이내에서 미달하였으나 직후 학기에 미달한 시간을 보충한 시간에 대하여는 차감 및 가산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승진 및 재임용 기간 이내에 보충을 완료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 강의평가 점수는 「강의평가 및 강의 개선 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 강의평가 점수의 전임교원 기준 백분위에 비례하여 부여한다. 다만, 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수업관리규정」 및 「학생평가규정」 준수는 담당하는 모든 강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강좌당 5점을 평가점수에서 차감한다.
 - 「수업관리규정」의 수업기간, 휴강 및 보강, 수업계획서 및 강의개선계획서 관련 규정 준수
 - 「학생평가규정」의 성적입력, 성적이의신청에 대한 답변 관련 규정 준수
- 교육역량 개발은 다음 각목과 같이 인정한다.
 - 교수법 컨설팅 이수, 교수법 관련 특강 및 워크숍 참여는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 법정의무교육 이수는 매 학년도에 요구되는 모든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부 또는 일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미이수 교육과정당 5점을 평가점수에서 차감한다.

5. 원격강좌 개발 및 운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인정한다.
 - 가. K-MOOC(정부사업 선정 및 개발)는 [별표 1의2] 제5호를 준용한다.
 - 나. K-MOOC(교내 개발), JJ-MOOC, KOCW, iClass, iClass+, xClass, tClass, 시그니처 강좌는 교수학습개발 센터에서 인정하는 신규 개발 동영상 강의콘텐츠로 한정한다.
 - 다. 가와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격강좌 또는 RUCK 등 대학 간 학점교류 원격강좌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경우, 과목당 점수를 부여한다.
 - 라. 다수의 교원이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해당 평가점수를 1/N로 나누어 균등하게 부여한다.
6. 비교과교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인정한다.
 - 가. 비교과교육이란 「학칙」 제26조에서 정하는 교과 이외에 추가로 진행되는 강의, 학습, 활동, 특강 등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 나. 비교과교육은 특강(전공, 자격증, 고시, 취업 및 진로 관련) 및 지도(현장 견학 및 답사, 대회 참가, 글로벌 워크숍, 허니컴 학습) 등을 대상으로 하며, 그 밖에 비교과교육지원센터장이 인정하는 비교과교육을 포함한다.
 - 다. 비교과교육에 대한 평가점수는 교육시간 1시간당 1점씩 인정한다. 다만,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한다.
 - 라. 교육시간은 학생역량개발시스템(onSTAR)에 등록된 학생 비교과 활동 시간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수의 교원이 참여할 경우 총 시간을 1.5 배 가산하여 인원수 대로 나누어 인정한다.
 - 마. 비교과교육을 인정받고자 하는 교원은 학생역량개발시스템(onSTAR)에 등록하여 비교과교육지원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학생상담은 정해진 기간에 웹종합정보시스템(JUIS)에 입력한 상담실적으로 한정한다.
8. 동아리지도는 대학본부, 단과대학 및 사업단에 등록하고 10명 이상의 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로, 관련 부서 및 대학 등에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동아리로 한정한다.
9. 석·박사배출은 논문 지도교수에게 석사는 1명당 10점, 박사는 1명당 20점을 부여한다.
10. 핵심성과관리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소속 학과의 해당연도 공시자료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신규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는 임용 후 2년 차까지 평가항목별로 만점을 부여한다.
 - 가. 신입생충원율은 매 학년도 학과별 정원 내 모집정원 대비 최종 등록자에 비례하여 부여한다.
(※ 예시, 신입생충원율이 98.0%인 경우 20점 × 0.98로 계산하여 19.6점을 부여함)
 - 나. 졸업생취업률은 매 학년도 정부에서 발표하는 학과별 취업률에 비례하여 부여한다.
(※ 예시, 졸업생취업률이 65.0%인 경우 20점 × 0.65로 계산하여 13.0점을 부여함)
 - 다. 중도탈락률은 매 학년도 재적인원 대비 중도탈락생수로 산정하며, 만점에서 중도탈락률(%)을 감점한다.
(※ 예시, 중도탈락률이 4.0%인 경우 20점 만점에서 4.0을 빼고 16.0점을 부여함)

[별표 4] 교내 봉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개정 2016.8.29., 2017.5.22., 2020.2.20., 2020.9.1., 2021.12.14., 2022.6.17.>

봉사업적 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교내 봉사 활동	행 정 ¹	교무위원, 교수회장, 대학평의원회의장	50점	연간상한선: 60점
		부속 및 부설기관장, 교수회부회장	40점	
		기타 보직자 ² , 교수회상임위원, 대학평의원회 의원	30점	
		전공주임, 학과장, PD ³	30점	
		연구소장	종합연구소	30점
			특화연구소	20점
	위원회 활동 ⁴		20점	연간상한선: 60점
	학사지도	신입생 유치활동 ⁵	5점	연간상한선: 40점
		해외 특별학습 인솔교수(3일 이상) ⁶	10점	연간상한선: 20점
		전국(지역별) 경시대회, 공모전, 전공취업캠프 인솔참가	5점	연간상한선: 20점
		사회봉사활동 지도교수 ⁷	5점	연간상한선: 20점
	기타 봉사활동	학내 주관 특강 및 강연 활동 ⁸	5점	연간상한선: 20점
		기타 대학발전 기여활동 ⁹	10점	연간상한선: 50점

1. 행정 분야의 봉사활동은 연간 6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각 평가항목의 연간 평가점수는 활동 기간에 따라 부여한다. (평가점수 = 해당 개월 수 / 12개월 × 연간 점수)
2. 기타 보직자는 총장발령을 받은 보직자 중 교무위원이나 위에 언급된 보직자를 제외한 보직자를 말한다.
3. PD는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 및 보건의료정보관리인증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단위의 책임교수를 지칭한다.
4. 교내위원회 활동의 평가점수는 연간 20점을 부여하며, 최대 6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각 평가항목의 연간 평가점수는 활동기간에 따라 부여한다. (평가점수 = 해당 개월 수 / 12개월 × 연간 점수)
5. 신입생 유치활동은 입학처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학과 자체적으로 실시한 신입생 유치활동은 소정의 결과물과 출장신청서 및 출장복명서를 웹종합정보시스템(JUIS)의 교원업적 프로그램에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6. 해외 특별학습은 교과교육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는 학습과정으로 학생들의 해외연수인솔 등의 봉사활동을 말하며, 연간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7. 사회봉사활동은 학생들이 학점취득을 위하여 학교에 신청한 사회봉사활동을 말한다.
8. 학내 주관 특강 및 강연 활동이란 정규 강의 이외에 학교의 제 기관에서 의뢰하여 행해진 특강 및 강연을 말한다.
9. 기타 대학발전 기여활동은 총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봉사활동을 말한다. 다만, 봉사업적 인정을 희망하는 부서의 장은 교무처장에게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5.22., 2020.9.1.>

[별표 4의2] 봉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2023학년도 1학기 이후 신규임용 교원) <신설 2022.12.14.>

봉사업적 평가항목			평가점수	연간 상한 점수
교내	보직 ¹	교무위원, 교수회장, 대학평의원회의장	50점/년	100점
		대학본부 부속(설)기관장, 부처장, 산학협력부단장, 종합연구소장, 공학교육혁신센터장, 스타워트니스센터장, 교육연수원장, 교직원지원부장, 교수회부회장	40점/년	
		학과장(전공주임, 교육과장), 공과대학 PD, 교수사정관, e-북지관장, 특화연구소장, 대학본부 외 부설기관장	30점/년	
	정부재정지원사업 운영 ²	대학 전체 단위 사업(부)단장	40점/년	
		단대/부서 단위 사업(부)단장	30점/년	
		학과(전공) 단위 사업(부)단장	20점/년	
	보고서 집필 ³	평가·사업보고서	15점/건	50점
		정부재정지원사업 연차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15점/건	
	위원회 활동 ⁴	대학 전체 단위 위원회	20점/년	50점
		단대/부서 단위 위원회	10점/년	
	기타 활동 ⁵	신입생 유치 활동	5점/건	100점
		사회봉사 활동	5점/건	
		교내 특강 및 강연	5점/건	
		대학신문 칼럼 게재	5점/건	
교외 ¹	학술단체 활동 ⁶	회장	30점/년	50점
		부회장, 편집위원장	20점/년	
		그 밖의 임원 및 편집위원	10점/년	
	공공기관 활동 ⁷	중앙정부 전문(자문)위원	20점/년	40점
		지방정부 전문(자문)위원	15점/년	
		공공기관 전문(자문)위원	10점/년	
	출제위원 활동 ⁸	국가고시 출제위원	10점/건	30점
		기타시험 출제위원	5점/건	
	언론·홍보 활동 ⁹	신문 칼럼 게재 및 방송 출연	5점/건	30점
	수상(개인) ¹⁰	중앙정부 훈·포장	50점/건	50점
		중앙정부 표창	20점/건	
		지방정부	10점/건	
		공공단체 및 사회단체	5점/건	

- 보직은 「책임시간 및 강의료지급 규정」 [별표 1]의 보직 교원을 준용한다. 다만, 겸직 교원은 높은 점수를 부여하며, 보직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할 때는 월할 계산한다(이하 같다).
- 정부재정지원사업의 구분은 [별표 1의2] 제3호의 사업계획서를 준용한다. 다만, 부단장에게는 평가점수의 70%를 부여하며, 보직자가 사업(부)단장을 겸직할 때는 둘 중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 보고서 집필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인정한다. 다만, 해당 보고서 및 관련 공문에서 그 역할이 명시된 교원으로 한정한다.
 - 평가·사업보고서는 신규 또는 단계별 평가에서 인증 또는 선정된 보고서는 [별표 1의2] 제3호에 따라 연구업적으로 인정하며, 그 밖에 연차보고서, 결과보고서, 미선정 보고서 등은 봉사업적으로 인정한다.
 - 정부재정지원사업 연차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는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봉사업적으로 인정한다.
- 위원회 활동은 대학/부서 단위 이상의 위원회로 한정한다. 다만, 보직 교원이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가하거나, 평가·사업보고서를 위해 구성된 위원회는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 기타 활동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인정한다.

가. 신입생 유치 활동은 입학처가 주관하거나 입학처의 승인을 받은 사업 및 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나. 사회봉사 활동은 사회봉사센터가 주관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다만, 해외봉사 지도교수에게는 건당 20점을 부여한다.

다. 교내 특강 및 강연은 전체 교원, 직원, 학생, 학부모 또는 동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 및 강연으로 한정한다.

6. 학술단체 활동은 전국규모 이상의 학술단체에서 6개월 이상 활동한 경우로 한정한다.
7. 공공기관 활동은 정해진 기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상 활동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전문(자문) 기관은 위촉장을 발급하거나 공문을 발송한 기관에 따라 판단한다.
8. 출제위원 활동은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국가고시와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타시험으로 한정한다.
9. 언론·홍보 활동은 방송 및 신문의 토론(좌담)회에 출연하거나 칼럼을 게재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수상은 개인 명의의 수상으로 한정한다.

[별표 5] 교외 봉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개정 2017.12.19., 2023.11.19.>

봉사업적 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교외 봉사 활동 ¹	학술단체활동 ²	국제학회	회 장	50점	
			부회장, 편집위원장	30점	
			그외 임원 및 편집위원	20점	
			좌장, 사회, 지명토론자	10점	연간상한선: 30점
		전국학회	회 장	30점	
			부회장, 편집위원장	20점	
			그외 임원 및 편집위원	10점	
			좌장, 사회, 지명토론자	10점	연간상한선: 30점
		지방학회	회 장	20점	
			부회장, 편집위원장	10점	
			그외 임원 및 편집위원	5점	
			좌장, 사회, 지명토론자	10점	연간상한선: 30점
	공공기관 및 산업체 봉사활동 ³	중앙정부 전문(자문)위원		20점	연간상한선: 40점
		국책사업 심사 및 평가위원		20점	
		지방정부 전문(자문)위원		15점	
		공공기관 전문(자문)위원		10점	
		종교기관 전문(자문)위원		10점	
		교육인증 프로그램 평가위원, 평가단장 ⁴		10/20점	
		산업체 전문(자문)위원		10점	연간상한선: 30점
		국가고시 ⁵	출제위원, 선정위원	15점	
			채점위원	10점	
		기타시험	출제위원, 선정위원	10점	연간상한선: 20점
			채점위원	5점	
	강연 및 특강 ⁶	기관이나 단체의 특강, 강연 등		10점	연간상한선: 20점
	외부 논문심사	박사학위 논문심사		10점	연간상한선: 30점
		석사학위 논문심사, 학회 등 논문심사		5점	
	언론, 홍보활동	방송 출연 ⁷	중앙방송	15점	연간상한선: 30점
			지방방송	10점	연간상한선: 30점
		보도 및 칼럼게재	중앙지(정기간행물)	10점	연간상한선: 20점
			지방지(정기간행물)	5점	연간상한선: 20점
		교내신문 칼럼게재		5점	연간상한선: 10점
	심판, 심사위원 ⁸	국제대회		15점	연간상한선: 30점
		국내대회		5점	
	봉사관련 수상	중앙정부	훈, 포장	50점	연간상한선: 20점
			표창	20점	
		지방정부 ⁹		10점	
		공공단체 및 사회단체		5점	

1. 교외봉사활동의 경우는 봉사기간이 중복되더라도 각각의 봉사활동을 업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학술단체활동의 경우는 따로 정한다.
2. 학술단체의 임원활동에 대한 평가점수는 활동기간이 연간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정부(중앙, 지방) 및 공공기관 그리고 종교기관의 전문(자문)위원이나 산업체의 전문(자문)위원 및 기술고문 등의 활동은 서면·위촉되어 활동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간 35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각 평가항목의 연간 평가점수는 활동기간에 따라 부여한다. (평가점수 = 해당 개월 수 / 12개월 × 연간 점수)
4. 공학교육 및 보건계열교육, 경영학 교육, 사범대학 인증 평가 등 국가 공인 기관에서 실시하는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과나 전공의 교수가 이들 평가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10점을, 평가단장으로 활동할 경우 20점을 부여한다.
5. 국가고시는 중앙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그리고 기타 시험은 지방정부나 공공기관 그리고 산업체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말하며, 국가고시의 경우는 연간 30점을 그리고 기타시험의 경우는 연간 2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6. 강연 및 특강은 전주대학교 교원의 신분으로 행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연간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7. 방송 출연은 토론(좌담)회 등에 준하는 수준에 출연한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11.19.>
8. 심판이나 심사위원의 경우는 연간 30점을 초과할 수 없다.
9. 지방정부나 공공단체 및 사회단체의 봉사관련 수상은 연간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10. 위의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봉사업적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따로 심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6] 일반교수의 산학협력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개정 2016.2.23., 2016.8.29., 2017.2.9., 2017.12.19., 2018.11.27., 2024.3.1.>

업적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산학협력	특허 및 신안		해외특허 등록		750점	해외특허는 OECD와 G20 국가에 한정하며, 동일특허는 1회에 한정하여 인정	
			국내특허 등록		200점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저작권(소프트웨어 포함) 등록		100점		
	연구 활동	사업 추진 실적	대형 사업계획 입안 및 작성 ¹		50점	연간 상한선: 100점	
			중소형 사업계획 입안 및 작성 ²		30점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교육 활동	산학 연계 실적	계약학과/대학원 개설 ³		50점	연간 상한선: 200점	
			계약학과 교과목 개설 ⁴		25점/1과목		
			캡스톤디자인 지도 ⁵	일반형	15점/1건		
				기업연계형	25점/1건		
			국내외 EXPO작품 ⁶		50점		
			석·박사 배출실적 ⁷		10점/1명		
			대외 기부금 수혜실적 ⁸		20점/100만원		
			기술·경영·디자인지도 ⁹		20점/1업체		
			기술이전(기술료) ¹⁰		75점/100만원		
			산학인력 국내 교류 ¹¹		5점/1명		
			산학인력 국외 교류 ¹²		10점/1명		
			산학협력프로젝트 교과목 운영		10점/1학점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10점/1학점		
			외부 전문인력 특강 유치		10점/1건		
			현장견학(산업체 견학 포함) 지도		10점/1건		
			산업체 위탁교육		10점/1건		
			취업동아리 지도		10점/1동아리		
			산학협력 겸임교수 초빙		20점/1건		
			현장실습(체협) 임장지도 ¹³		20점/1업체		
			지역 사회 연계 실적	지역사회 혁신 세미나, 포럼 개최 ¹⁴			20점/1건
		지역사회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지도 ¹⁵		10점/1건			
		지역사회 문제해결 리빙랩 운영 ¹⁶		30점/1건			
		지역사회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¹⁷		10점/1건	연간상한선: 100점		
봉사 활동	국책 사업	총괄교수 ¹⁸	대형: 5억원 이상		50점	-단일과제에 한정하여 인정 -학기당 부여	
			중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0점		
			소형: 1억원 미만		30점		
		실무교수 ¹⁹	대형: 5억원 이상		30점		
			중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0점		
			소형: 1억원 미만		10점		
	산학 협력 협의회 ²⁰	산학협력협의회 책임교수		30점	최초 1회 인정		
		< 산학협력협의회 개최건수 >	- 1회	20점	5명 이상 참석		
- 2회	30점						
- 3회 이상	50점						
가족 회사 관리 ²¹	< 산학협력체결건수 >	- 2건 이하	10점				
		- 3건	20점				
		- 4건 이상	30점				

업적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관리수>	- 2개 이하 - 3개 - 4개 이상	10점 20점 30점	학기당 부여
			<유료가족회사 유치>	- 1백만원 이하 - 1백만원 초과	10점 20점	연간 부여
	학술 활동	연구보고서			25점	연간 상한선: 100점 (정부기관, 국내·외 학술연구지원기관 및 산학협력 기관에서 공모한 연구과제 또는 산학협약에 따른 연구과제에 한정함)
		외부학술연구비 신청과제 실적			5점/1건	연간 상한선: 25점
	외부연구과제 수탁실적(연구간접경비 납부액 기준)			1점/5만원	연간 상한선: 300점	
	산업체연구비 수혜실적(연구비 현금 기준)			1점/20만원	연간 상한선: 300점	
	창업 활동	상품화 실적 ²²			1점/2천만원	연간 상한선: 80점
		사업화 실적 ITEM ²³			30점/1건	
		사업화 제품의 공인단체 수상			50점	
		창업(벤처·개인창업) ²⁴			300점	
		창업교육	창업 교과목 개발 ²⁵		25점/1과목	연간 상한선: 100점
			창업 교재 개발 ²⁶		20점/1과목	
			창업강좌 교과목 운영 ²⁷		10점/1학점	
		창업지도	창업동아리 지도 ²⁸		10점/1동아리	연간 상한선: 50점
			창업 멘토링 ²⁹		5점/1건	
		창업연구	창업 연구보고서 ³⁰		25점/1건	

1. 사업비 3억 원 이상의 대형 사업, 센터 유치사업 입안 또는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참여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단독과제는 제외한다.
2. 사업비 3억 원 미만의 중소형 사업 입안 또는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참여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단독과제는 제외한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체와 공동으로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재학 중 일정한 기간 사회나 업체에서 현장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해당기업의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학과 개설시 해당학과(전공)교수 전원에게 50점을 부여한다.
4. 산학계약형학과 전공주임 교수회의의 추천을 받아 새로운 추세를 반영한 교과목 개발에 대하여 연간 1과목에 한하여 25점을 부여한다. 다만, 5호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5. 교과목(캡스톤디자인, 종합설계, 개인팀프로젝트, Adventure Design, 해커톤)으로 개설·운영되어 설계·제작함과 동시에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과정을 경험하는 졸업종합설계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의미한다. 다만, 기업연계형은 캡스톤디자인 수행과정에 기업체, 정부출연연구소, 혁신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경우 인정한다. <개정 2018.11.27., 2024.3.1.>
6. 산학연계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제품을 국내외 공인된 전시회에 출품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7. 산학공동 지도 교수제도에 의한 석·박사 연계 과정을 통한 석사, 박사 배출 실적을 의미한다. 다만, [별표 3]의 16호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개정 2017.12.19.>
8. 재학생 장학금으로 유치한 산업체 기부금으로 100만원에 20점을 유치(해당)교수에게 부여한다.
9. 산업체의 애로기술·경영에 대한 기술지도 및 경영지도 실적으로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

다.

10. 교수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특허, 논문, 기술)을 기업체에 기술이전하여 발생하는 기술료를 기준으로 100만원에 75점을 해당 교수에게 부여한다.
11. 산학협력기관에 대한 교수 및 기업연구원의 인력교류 시 1명에 5점을 해당학과(전공)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12. 국외 산학협력기관과의 교수 및 학생 인력교류 시 1명에 10점을 해당전공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13. 현장실습(체험)의 입장지도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1개 업체당 20점을 해당 교수에게 부여한다. 현장실습에는 산업체 인턴십, 교육실습, 임상실습을 포함한다. <개정 2018.11.27.>
14. 지역사회 혁신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기업체, 정부출연연구소, 혁신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된 10인 이상이 참여한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의 행사 개최 실적을 인정하며, 관련 공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3.1.>
15. 교과목에서 학습한 이론을 지역사회의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교육프로그램 지도를 의미한다. <신설 2024.3.1.>
16. 지역사회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수행을 의미하며, 학생을 반드시 포함하고, 1학기 이상 운영되는 리빙랩 프로그램의 책임교수에게 부여한다. <신설 2024.3.1.>
17.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 강화를 위해 소속 단과대학 학장이 승인한 일반인 대상 교내 특강, 평생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의미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3.1.>
18. 총괄교수란 협약된 국책사업 사업계획서상의 총괄책임자를 의미한다. <개정 2024.3.1.>
19. 실무교수란 사업단(센터)에 참여하는 실무교수를 의미하며,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하는 자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또한, 학과단위로 유치한 국책사업의 경우 해당학과(전공)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개정 2024.3.1.>
20. 산학협력협의회 구성은 최소 3개 업체,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동 협의회의 책임교수 및 협의회 개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인정점수를 부여한다. <개정 2024.3.1.>
21. 가족회사 산학협력체결건수의 인정점수는 근거자료로 관리카드(협약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되나 신규에 한정한다. 가족회사 관리수의 경우에는 매학기 가족회사와의 연관 자료(회의록, 자문록, 방문일지 등)를 1건 이상 제출해야만 학기당 인정점수를 부여한다. 유료가족회사 유치 인정점수는 기존 또는 신규 가족회사 중 유료가족회사로 등록한 후 연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인정하며, 연회비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여한다. <개정 2017.12.19., <개정 2024.3.1.>>
22. 산학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을 상품화하는 경우에 매출액 기준으로 2,000만원당 1점을 부여한다. <개정 2024.3.1.>
23. 연구개발 결과 또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ITEM을 개발하여 사업화한 경우를 의미한다. <개정 2024.3.1.>
24.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에 의거 총장의 겸직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매출액이 발생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300점을 부여한다. 다만,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정 2017.2.9., 2018.11.27., 2024.3.1.>
25.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창업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교과목 개발에 대하여 연간 1과목에 한정하여 25점을 부여한다. <신설 2017.2.9.> <개정 2024.3.1.>
26. 대학교재 이상의 창업교재를 새롭게 개발할 경우 연간 1회에 한정하여 20점을 부여한다. <신설

2017.2.9.> <개정 2024.3.1.>

27. 창업강좌란 대학생의 창업역량 및 기업가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개설된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한국연구재단에서 명시된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되어야 한다. 창업강좌를 기획하고 운영한 책임교수에 한하여 1학점당 10점을 부여한다. <신설 2017.2.9.> <개정 2024.3.1.>
28. 대학 예산(교비, 정부지원금 등)을 지원받아 창업아이템 기획 및 제작을 수행하는 창업동아리에 한하며, 창업동아리 지도교수에게 동아리 당 10점씩 부여한다. <개정 2024.3.1.>
- ※ 증빙서류: 해당부서 및 사업단에서 지원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 <개정 2017.2.9.>
29. 학생, (예비)창업자의 기술·경영, 창업사업화, 투자 등 창업멘토링으로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1건당 5점씩 부여한다. 단, 기술·경영·디자인지도 실적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개정 2024.3.1.>
- ※ 증빙서류: 창업 멘토링 일지(멘토링 사진 포함) <신설 2017.2.9.>
30. 정부기관, 국내·외 학술연구지원기관, 산학협력 기관에서 공모한 연구과제 또는 사업단에 선정되어 창업 연구보고서를 작성 시 25점을 부여한다. <신설 2017.2.9.> <개정 2024.3.1.>

[별표 7]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산학협력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개정 2016.2.23., 2016.8.29., 2017.2.9., 2017.5.22., 2017.12.19., 2024.3.1.>

업적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산학협력	특허 및 신안		해외특허 등록	750점	해외특허는 OECD와 G20 국가에 한정하며, 동일특허는 1회에 한정하여 인정	
			국내특허 등록	200점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저작권(소프트웨어 포함) 등록	100점		
	연구 활동	사업 추진 실적	대형 사업계획 입안 및 작성 ¹	50점	연간 상한선: 100점	
			중소형 사업계획 입안 및 작성 ²	30점		
		연구 과제 실적	연구보고서	25점	연간 상한선: 100점 (정부기관 및 국내·외 학술연구지원기관 및 산학협력 기관에서 공모한 연구과제 또는 산학협약에 한정함)	
			외부연구과제 신청실적	10점/1건	연간 상한선: 50점 연구책임자에 한정함	
		외부연구과제 수탁실적		1점/5만원	연구간접경비 납부액 기준 연간 상한선: 300점	
		산업체연구비 수혜실적 ³		1점/20만원	연구비 현금기준 연간 상한선: 300점	
		교육 활동	산학 연계 실적	계약학과/대학원 개설 ⁴	50점	
	계약학과 교과목 개설 ⁵			25점/1과목		
	캡스톤디자인 지도 ⁶			일반형	15점/1건	
				기업연계형	25점/1건	
	국내외 EXPO작품 ⁷			50점		
	석·박사 배출실적 ⁸			10점/1명		
	대외 기부금 수혜실적 ⁹			20점/100만원		
	기술·경영·디자인지도 ¹⁰			20점/1업체	연간 상한선: 200점	
	기술이전(기술료) ¹¹			75점/100만원		
	산학인력 국내 교류 ¹²			5점/1명		
	산학인력 해외 교류 ¹³			10점/1명		
	산학협력프로젝트 교과목 운영			10점/1학점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10점/1학점		
	외부 전문인력 특강 유치			10점/1건		
	현장실습(산업체 견학 포함) 지도			10점/1건		
	산업체 위탁교육			10점/1건		
	취업동아리 지도			10점/1동아리		
	산학협력 겸임교수 초빙			20점/1건		
	현장실습 임장지도 ¹⁴			20점/1업체	연간 상한선: 200점	
	지역 사회 연계 실적		지역사회 혁신 세미나, 포럼 개최 ¹⁵	20점/1건	연간상한선: 100점	
		지역사회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지도 ¹⁶	10점/1건			
		지역사회 문제해결 리빙랩 운영 ¹⁷	30점/1건			
		지역사회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¹⁸	10점/1건	연간상한선: 100점		
	봉사 활동	국책 사업	총괄교수 ¹⁹	대형: 5억 원 이상	50점	단일과제에 한정하여 인정 학기당 부여
중형: 1억 원 이상 5억				40점		

업적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원 미만		
			소형: 1억 원 미만	30점	
			대형: 5억 원 이상	30점	
		실무교수 ²⁰	중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0점	
			소형: 1억 원 미만	10점	
	산학협력협의회 ²¹	산학협력협의회 책임교수		30점	최초 1회 인정
		<산학협력협의회 개최 건수> - 1회 - 2회 - 3회 이상		20점 30점 50점	5명 이상 참석
	가족회사관리 ²²	<산학협력체결 건수> - 2건 이하 - 3건 - 4건 이상		10점 20점 30점	학기당 부여
		<관리수> - 2개 이하 - 3개 - 4개 이상		10점 20점 30점	
		<유료가족회사 유치> - 1백만원 이하 - 1백만원 초과		10점 20점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창업활동		상품화 실적 ²³		1점/2천만원	연간상한선: 100점
		사업화 실적 ITEM ²⁴		30점/1건	
		벤처창업(개인창업 포함) ²⁵		50점	
		사업화 제품의 공인단체 수상		50점	
	창업교육	창업 교과목 개발 ²⁶		25점/1과목	연간상한선: 100점
		창업 교재 개발 ²⁷		20점/1과목	
		창업강좌 교과목 운영 ²⁸		10점/1학점	
	창업지도	창업동아리 지도 ²⁹		10점/1동아리	연간상한선: 50점
		창업 멘토링 ³⁰		5점/1건	
	창업연구	창업 연구보고서 ³¹		25점/1건	

1. 사업비 3억 원 이상의 대형 사업, 센터 유치사업 입안 또는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참여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단독과제는 제외한다.
2. 사업비 3억 원 미만의 중소형 사업 입안 또는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참여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단독과제는 제외한다.
3. 산업체연구비 수혜실적 인정은 현금기준으로 20만원에 1점을 부여한다. 다만, 외부연구과제 수탁실적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

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체와 공동으로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재학 중 일정한 기간 사회나 업체에서 현장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해당기업의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학과 개설시 해당학과(전공)교수 전원에게 50점을 부여한다.

5. 산학계약형학과 전공주임 교수회의의 추천을 받아 새로운 추세를 반영한 교과목 개발에 대하여 연간 1과목에 한정하여 25점을 부여한다. 다만, 5호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6. 교과목(캡스톤디자인, 종합설계)으로 개설·운영되어 설계·제작함과 동시에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과정을 경험하는 졸업종합설계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의미한다. 다만, 기업연계형은 캡스톤디자인 수행과정에 기업체, 정부출연연구소, 혁신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경우 인정한다. <개정 2024.3.1.>
7. 산학연계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제품을 국내외 공인된 전시회에 출품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8. 산학공동 지도 교수제도에 따른 석·박사 연계 과정을 통한 석사, 박사 배출 실적을 의미한다. 다만, [별표 3]의 12호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9. 재학생 장학금으로 유치한 산업체 기부금으로 100만원에 20점을 유치(해당)교수에게 부여한다.
10. 산업체의 애로기술·경영에 대한 기술지도 및 경영지도 실적으로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교수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특허, 논문, 기술)을 기업체에 기술이전하여 발생하는 기술료를 기준으로 100만원에 75점을 해당 교수에게 부여한다.
12. 산학협력기관에 대한 교수 및 기업연구원의 인력교류 시 1명에 5점을 해당학과(전공)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13. 국외 산학협력기관과의 교수 및 학생 인력교류 시 1명에 10점을 해당전공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14. 현장실습의 임장지도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1개 업체당 20점을 해당 교수에게 부여한다. 현장실습에는 산업체 인턴십, 교육실습, 임상실습을 포함한다.
15. 지역사회 혁신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기업체, 정부출연연구소, 혁신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된 10인 이상이 참여한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의 행사 개최 실적을 인정하며, 관련 공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3.1.>
16. 교과목에서 학습한 이론을 지역사회에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교육프로그램 지도를 의미한다. <신설 2024.3.1.>
17. 지역사회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수행을 의미하며, 학생을 반드시 포함하고, 1학기 이상 운영되는 리빙랩 프로그램의 책임교수에게 부여한다. <신설 2024.3.1.>
18.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 강화를 위해 소속 단과대학 학장이 승인한 일반인 대상 교내 특강, 평생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의미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3.1.>
19. 총괄교수란 협약된 국책사업 사업계획서상의 총괄책임자를 의미한다. <개정 2024.3.1.>
20. 실무교수란 사업단(센터)에 참여하는 실무교수를 의미하며,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하는 자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또한, 학과단위로 유치한 국책사업의 경우 해당학과(전공)교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개정 2024.3.1.>
21. 산학협력협의회 구성은 최소 3개 업체,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동 협의회의 책임교수 및 협의회 개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인정점수를 부여한다. <개정 2024.3.1.>
22. 가족회사 산학협력체결건수의 인정점수는 근거자료로 관리카드(협약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되거나 신

규에 한정한다. 가족회사 관리수의 경우에는 매학기 가족회사와의 연관 자료(회의록, 자문록, 방문 일지 등)를 1건 이상 제출해야만 학기당 인정점수를 부여한다. 유료가족회사 유치 인정점수는 기존 또는 신규 가족회사 중 유료가족회사로 등록한 후 연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인정하며, 연회비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여한다. <개정 2017.12.19., 2024.3.1.>

23. 산학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을 상품화하는 경우에 매출액 기준으로 2,000만원당 1점을 부여한다. <개정 2024.3.1.>

24. 연구개발 결과 또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ITEM을 개발하여 사업화한 경우를 의미한다. <개정 2024.3.1.>

25.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에 의거 총장의 검직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회사가 유지되고 있다는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를 제출할 시 매년 점수를 부여한다. <개정 2017.2.9., 2024.3.1.>

26.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창업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교과목 개발에 대하여 연간 1과목에 한정하여 25점을 부여한다. <신설 2017.2.9.> <개정 2024.3.1.>

27. 대학교재 이상의 창업교재를 새롭게 개발할 경우 연간 1회에 한정하여 20점을 부여한다. <신설 2017.2.9.> <개정 2024.3.1.>

28. 창업강좌란 대학생의 창업역량 및 기업가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개설된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한국연구재단에서 명시된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되어야 한다. 창업강좌를 기획하고 운영한 책임교수에 한하여 1학점당 10점을 부여한다. <신설 2017.2.9.> <개정 2024.3.1.>

29. 대학 예산(교비, 정부지원금 등)을 지원받아 창업아이템 기획 및 제작을 수행하는 창업동아리에 한하며, 창업동아리 지도교수에게 동아리 당 10점씩 부여한다. <개정 2024.3.1.>

※ 증빙서류: 해당부서 및 사업단에서 지원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 <개정 2017.2.9.>

30. 학생, (예비)창업자의 기술·경영, 창업사업화, 투자 등 창업멘토링으로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1건당 5점씩 부여한다. 단, 기술·경영·디자인지도 실적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개정 2024.3.1.>

※ 증빙서류: 창업 멘토링 일지(멘토링 사진 포함) <신설 2017.2.9.>

31. 정부기관, 국내·외 학술연구지원기관, 산학협력 기관에서 공모한 연구과제 또는 사업단에 선정되어 창업 연구보고서를 작성 시 25점을 부여한다. <신설 2017.2.9.> <개정 2024.3.1.>

[별표 8] 삭제 <2023.9.1.>

[별표 9] 삭제 <2023.9.1.>

[별표 10] 삭제 <2023.9.1.>

[별표 11] 삭제 <2023.9.1.>

[별표 12] 삭제 <2023.9.1.>

[별표 13] 삭제 <2023.9.1.>

[별표 14] 삭제 <2023.9.1.>

[별표 15] 삭제 <2023.9.1.>

[별첨 1] 삭제 <2020.9.1.>

[별첨 2] 업적 평가 이의 신청 및 재심 요청서

수신: 교무처장

업적 평가 이의 신청 및 재심 요청서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전공분야 및 평가 계열
		학과 전공			전공 계열
업적의 유형 및 내용	연구	산학협력	교육		봉사
경과	본인 요구		현재 인정내용		
	()업적 ()점		불인정 ()	평가점수 ()점	기타 ()
이의신청 사유 및 근거					
첨부자료 목록	1. 업적보고서 2. 증빙자료 3. 기타 관련자료				

위와 같이 본인의 업적에 대학 평가의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별첨 5] 기타 학교발전 기여활동 추천양식

수신: 교무처장

기타 학교발전 기여활동 추천양식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전공분야 및 평가 계열
		학과 전공		전공 계열
추 천 인	(인)			
추천사유				
활동내용	활 동 명 : 활동기간 : 참여인원 : 활동내용 :			
기대효과				
비 고				